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
번
안
호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9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%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.

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,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.

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,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교육비를”을 “교육비 또는 돌봄서비스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비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교육비는”을 “교육비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교육비를”을 “교육비등을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”을 “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500만원, 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 4제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 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</p>	<p>교육비등을</p>
<p>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500만원, 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</p>
<p>마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</p>	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· 3. (생 략) ④ ~ ⑪ (생 략)</p>	<p>마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</p>
	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	<p>④ ~ ⑪ (현행과 같음)</p>